

의안번호	2210602
의 퇴 인	전종덕 의원
회 답 일	2025.7.15.
추계번호	25C3031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(보조금 등)	(제1항)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, 시설·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1)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※ (현행법)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, 시설·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(제6항)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재난,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 (보조금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12. "인구감소지역"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(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)·군·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고,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보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지원은 현행법에 이미 명시²⁾되고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에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사업³⁾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현행은 국비로 지방의료원 건립, 시설장비 확충 등에 대해 일부 지원(국고보조율 50%)하고 있음

[표 1]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 예산액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3	2024	2025
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	61,295	49,748	62,729
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	6,000	8,000	8,000

자료: 보건복지부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추가로 수행할 사업 및 규모, 국가의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)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보조금 등)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3)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함

1. 지역주민의 진료사업
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(이하 “공공보건의료사업”이라 한다)
3. 삭제<2015.1.28.>
4. 의료인·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
5.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
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
7.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
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

- 또한 재난,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보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작성되어 추가재정소요 추계 시 필요한 정보, 즉 해당 지방의료원의 손실 규모, 국가의 예산 범위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